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태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6년 03월 31일 (화) 오전 09시

2. 장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332D호 (주세라트젠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주세라트젠 제6기 (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조승우(중임), 이상길(중임), 정철우(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보수 규정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급 지급규정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사항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주주),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03월 16일

주식회사 세라트젠
대표이사 조승우, 이선근 (직인생략)

정관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1. 제대혈, 줄기세포 등의 인체조직 보존, 증식 및 기타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 1.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업 1. 세포 보관 및 공급업 1. 의료기기,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바이오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사업 1.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세포배양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1. 제대혈, 줄기세포 등의 인체조직 보존, 증식 및 기타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 1.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업 1. 세포 보관 및 공급업 1. 의료기기,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바이오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사업 1.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세포배양 소재 제조 및 판매업 <u>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u> 1.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업의 목적 추가 - 추가 : 인터넷 자사몰 운영 등
제9조(종류주식의 수 및 내용) ② 발행 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로 한다.	② <u>제5조의 발행할</u>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로 한다	-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명확히 하고자 함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금조달의 필요로 10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른</u>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금조달의 필요로 10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법 조항 추가 - 공모 한도 삭제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및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직원 외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u>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u> 2.<u>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u> 3.<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u>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특별조치법 -> 특별법 수정 및 법조항 추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따라 임직원외의 지급 한도 추가 - 법 개정에 따른 수정 - 상동 - 상동
--	---	---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⑤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방법으로 부여하여 경우에는 <u>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u>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u>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u> ⑤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단, 권면액 이상이어야 한다.)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주식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u>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 수정 - 단서조항 추가 - 특별조치법 -> 특별법 수정 - 적용 법조항 번호 수정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u>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u>	- 동등배당 원칙 명시

제2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u>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u> ② <u>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u> ③ <u>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 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
제28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제 28 조(소집시기) <u>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u> -삭제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4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6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u>임원보수규정</u> 에 의한다.	-임원상여금지급규정 -> 임원보수규정